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473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4732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24 선고 2018가단2187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신영경, 배민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22. 8. 26.

판결선고 2022. 9. 3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24. 선고 2018가단2187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건물 제2층 F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3. 접수 제926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정, 판사 이재희, 판사 권현영